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 회칙

전 문

1. 상지대학교 한의과 대학 학생회(이하 본회)는 상지대학교 한의과 대학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학생 자치조직이다.
1. 본회는 겨래의 민족 의학의 전통을 잇는 계승자인 예비 한의학도로서의 학생들의 위상에 근거하여 한의학의 계승 발전과 민중들의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본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투쟁사의 한 주체인 청년 학생의 위상에 근거하여 자랑스런 민주주의 전통을 계승하여 제반의 비민주주의적 요소에 대항하여 투쟁하며, 또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참여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교육계 형성과 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고자 노력한다.
1. 본회는 숭고한 의료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박애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힘쓴다.

제 1 장 총 칙

1-1. (명칭)

본회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 (약칭 “상지한의학생회”, 이하 “본회”)라고 칭한다.

1-2. (목적)

본회는 학생들의 자주적,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본회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수렴 대변하며, 학생들의 교육 환경 및 복지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쓴다.

1-3 (회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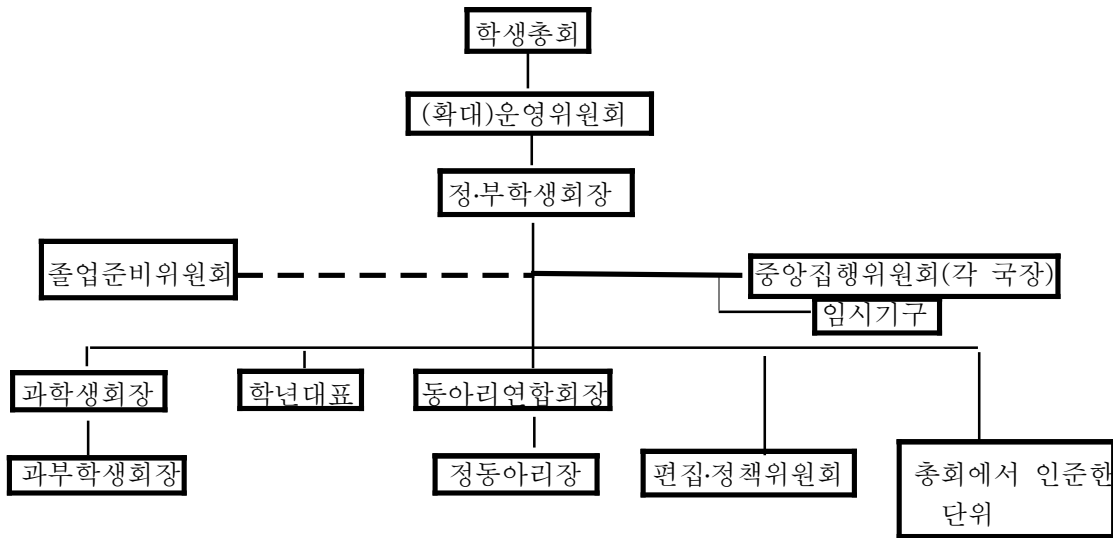
본회 회원은 해당년도 상지대학교 한의과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1-4.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선거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2)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3)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5) 회원은 회칙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한다.
- 6) 본회의 회원은 본회 자체의 이념과 목적을 부인하는 행위에 저항함으로써 본회를 수호하여야 한다.

1-5. (본회의 구성)

- 1) 본회는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학생회장/부회장의 대의체계를 둔다.
- 2) 본회는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하여 학생회장의 입안 하에 집행 체계를 설치한다.
- 3) 본회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임시(특별)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 4) 본회는 부문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 5) 본회는 본회의 위상에 부합하는 정당한 조직 결사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정한 지위와 권리를 부여한다.



제 2 장 학생 총회

2-1. (지위 및 구성)

- 1)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 및 의결기구로서 전체 회원들로 구성된다.

2-2. (권한)

- 1) 총회는 본회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 2) 총회는 학생회칙을 개정할 권한을 갖는다.
- 3) 총회는 한의대의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한다.
- 4) 총회는 학생회 사업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을 심의 의결한다.
- 5) 총회는 학생회 활동을 위하여 집행체계를 심의, 인준한다.
- 6) 총회는 임시(특별, 자문)기구에 대한 감사권을 갖는다.
- 7) 총회는 학생회 사업 결과 및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하여 감사권을 갖는다.

2-3. (회의 진행 및 의결)

- 1)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유고시 부학생회장이 대신하며, 모두 유고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자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한다.

- 2) 의장은 총회를 매 학기 1회 이상씩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 3)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의 2/3의 소집 요구 및 회원 중 1/4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 후 1주일 이내에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4) 일반적으로 본회의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 규정을 특별하게 마련한 사안에 대하여는 그것을 따른다.

제 3 장 (확대)운영위원회

3-1. (지위 및 구성)

- 1) 운영위원회는 상설적인 대의 기구로서, 학생회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구이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확대운영위원회는 수시로 열릴 수 있다.)
- 2)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회장 및 부회장, 과 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 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된다.
(확대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과부학생회장, 줄준위장, 각 동아리 대표, 기타 총회가 인준하는 조직체의 대표로 구성된다.)
- 3) 각 학년 대표는 학년별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 4) 과 정부학생회장, 졸업준비위원회, 동아리 연합회, 동아리 및 기타 조직의 대표는 해당 조직의 세칙에 근거하여 선출한다.
- 5) 기타의 조직은 그 조직의 대표를 파견하여야 한다.

3-2. (권한)

- 1) (확대)운영위원회는 학생회 집행주체의 사업 및 활동, 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심의, 의결할 권한을 갖는다.
- 2) (확대)운영위원회는 총회 소집에 해당되는 건을 제외한 사안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할 권한을 갖는다.
- 3) 재적위원의 2/3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 소집권을 갖는다.
- 4) 총회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인준권을 갖는다.
- 5) 정동아리 지위획득 및 박탈에 대한 인준권을 갖는다.
- 6) 임시기구의 설치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인준권을 갖는다.
- 7) 중앙집행위원에 대한 해임권을 갖는다.
단, 5)6)7)항목은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3-3. (진행)

- 1)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 2) 의장은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이상씩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확대운영위원회는 사안의 중요도의 의거하여 소집한다.
(확대운영위원회의 소집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대신할 수 있다.)

- 3) 의장의 소집 요구에 따라, 혹은 위원들 과반수의 소집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다.
- 4) 재적위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학생회장 및 부회장

4-1. (선출 및 지위)

- 1)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은 선거 세칙에 근거하여 선출한다.
- 2)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집행체계를 구성, 지휘, 감독한다.
- 3)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하며, 궐위시 그 직위를 계승한다.

4-2. (학생회장의 권한 및 업무 규정)

- 1)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 2) 총회, 운영위원회 소집권 및 소집의무를 갖는다.
- 3) 사업에 대한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체계를 구성, 지휘, 감독할 수 있다.
- 4) 중앙집행위원에 대한 임명권 및 해임 요구권을 가질 수 있다.
- 5) 본회의 사업 계획 및 예결산안을 편성하고, 그것을 집행할 집행체계를 구성하여 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 6) 필요한 경우, 확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시(특별,자문)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 7) 계획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 계획을 (확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집행한다.

4-3. (지위보장 및 탄핵)

- 1)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지위를 보장받는다.
- 2) 탄핵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중앙집행위원회

5-1. (지위 및 구성)

- 1)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제반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행을 위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 2) 중앙집행위원회는 정·부학생회장과 사업국 국장으로 구성한다.
- 3) 중앙집행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이 겸임한다.

5-2. (업무 및 권한)

- 1) 중앙집행위원은 정·부학생회장을 보좌한다.

- 2) 중앙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 통솔 하에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 3) 중앙집행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국원을 둘 수 있고 중앙위원회에 대리 참석시킬 수 있다.
- 4) 중앙집행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생회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 5)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활동 및 예합결산에 관한 내역을 학생총회 및 (확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5-3. (소집 및 의결)

- 1) 중앙집행위원회는 의장 또는 의장을 제외한 중앙집행위원회 1/3이상 요구 시 소집할 수 있다.
- 2) 중앙집행위원회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임시 기구

6-1. (일반 규정)

- 1) 학생회에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임시기구를 둘 수 있다.
- 2) 설치하는 학생회장의 발의 및 확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하여 설치하며, 총회의 감사를 받는다.
- 3) 임시기구는 목적 및 사업 계획, 예산집행 계획, 조직 구성 안을 확대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승인과 함께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제 7 장 감사 위원회

7-1. (지위 및 구성)

- 1) 감사위원회는 총회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각 과를 대표하는 각 1인 이상 2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 2) 감사위원은 총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감사위원들 중 한의학과 위원 중 1인이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7-2. (업무 및 권한)

- 1) 감사위원회는 학생회의 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 내용,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

- 2)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최소 매 학기 1번 이상,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 3) 감사위원회는 확대 운영 위원의 1/4 혹은 전체 학생의 1/8의 발의나, 위원회 자체 내의 결정에 의하여 수시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 4) 감사 결과는 공시되어야 한다.
- 5) 학생회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6) 학생회는 감사위원회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 8 장 졸업준비위원회

8-1. (일반규정)

- 1) 졸업준비위원회는 한의학과 4학년 학우들이 졸업 및 국가고시를 원활히 준비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계이다.
- 2) 졸업준비위원회의 제반 활동 및 예*결산은 졸업위 세칙에 의하여 심의*의결한다.
- 3) 졸업준비위원장은 확대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 9 장 동아리 및 동아리 연합회

9-1. (일반 규정)

- 1) 회원들은 부문적 이해를 성취하기 위하여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
- 2) 동아리들은 분야에 따라 자율적으로, 동아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발적인 결사체인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동아리간의 문제들은 자율적으로 해결한다.
- 3) 동아리의 활동은 그 활동이 학생회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한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할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 4) 동아리의 활동 내용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그 성과를 전체 한의대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5) 구성된 동아리연합회는 그 대표를 운영위원회에 파견하여, 학생들의 부문적 이해를 대변할 수 있다.
- 6) 정동아리의 대표는 확대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7) 정동아리의 지위 획득 및 박탈은 동아리 연합회 세칙에 근거하며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인준한다.
- 8) 학생회는 동아리들의 활동이 학생회의 목적과 어긋나지 않는 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 10 장 확대운영위원회와 학생들의 자발적인 조직

10-1. (일반 규정)

- 1) 회원들의 자발적인 조직은 원칙적으로 동아리 연합회에 가입하여야 확대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만일 조직의 성격이 동아리 연합회와 부합하지 않아 동아리 연합회에 소속되지 않고 확대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 확대운영위원회에서는 해당 조직이 동아리 연합회에 소속 여부를 결정하고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동아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다.
- 2) 확대운영위원회는 지위를 받은 조직의 제반 활동 및 예*결산 내역을 심의하며 학생총회는 해당 조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 3) 확대운영위원회와 직접적인 연계를 갖지 않는 조직 결사라 하더라도 그 활동 목적이 상지대학교 혹은 한의대학에 도움을 주거나, 명예를 드높이는 데 기여하거나, 기타 유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회는 확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10-2. (편집위원회)

10-2-1 (목적 및 지위)

- 1) 편집위원회는 1-2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중립된 자세로 학우들의 인식을 선양하고 올바른 학내 여론을 창달한다.
- 2) 편집위원회의 대표는 확대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10-2-2 (업무 및 권한)

- 1) 편집위원회는 한 학기에 2회 이상 의아리를 간행한다.
- 2) 의아리 대신 한길지로 대신할 수 있다.

10-2-3 (구성 및 운영)

- 1)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편집위원회의 자체 세칙에 의거한다.
-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학생회의 지원금과 기타 재원에 의거한다.
- 3) 학기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학운위와 총회를 통해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박탈당한다.

10-3. (정책위원회)

10-3-1 (목적 및 지위)

- 1) 한의과대학(한방병원 포함)의 발전적 방향 제시와 한의학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위한 정책마련의 굳건한 토대를 구축한다.
- 2) 정책위원회의 대표는 확대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10-3-2 (업무 및 권한)

- 1) 정책위원회는 매 학기 마다 활동 결과를 자료집으로 구성하여 발행한다.
- 2) 하계 방학 중에 정책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10-3-3 (구성 및 운영)

- 1)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정책위원회의 자체 세칙에 의거한다.
-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학생회의 지원금과 기타 재원에 의거한다.
- 3) 학기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학운위와 총회를 통해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박탈당한다.

제 11 장 선거 세칙

11-1. (선거 원칙 및 선거권, 피선거권)

- 1)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 2) 본회의 회원은 1인 1표의 선거권을 갖으며, 위임되지 아니한다.
- 3) 정?부학생회장의 입후보는 본회의 회원으로 6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로 하며, 본회의 회원 1/10 이상의 기명 추천을 받아야 한다.

11-2.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선거의 진행)

- 1) 선거 관리 위원회는 회계연도 60일전을 전후하여 학년대표 전원과 현 정?부학생회장 중 1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함)으로 구성한다.
- 2) 선거 시기는 회계연도 30일 전까지로 한다.
- 3)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 개시 1주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4) 입후보자들은 최소한 1주일 동안의 선거 활동 기간을 보장받는다.
- 5) 선거활동에 대한 세세한 규정은 선관위와 각 후보 진영 대표자들의 협의로 규정한다.
- 6) 선거 결과는 즉시 발표한다.

11-3. (선출 방법)

- 1) 본회의 재적 인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 2) 1차 투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행하여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 3) 단독 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를 진행하여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11-4. (재선거 및 보궐 선거)

- 1) 학생회장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잔임 기간이 210일 이상일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 210일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지위를 계승한다.

제 12 장 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보조금,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
- 2)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3) 학생회비의 책정은 매년 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 4) 학생회는 학생회의 수납 및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5) 학생회비의 예합결산 내역은 총회에 보고 되어야 하며, 총회가 감사권을 갖는다.
- 6) 학생총회에서 예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새로운 예산안을 편성한다.

(특별 규정)

- 1)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학생회비는 한의예과 신입생들의 학생회비에 준하여 책정하고 단대 학생회에서 집행한다.
- 2) 과도적 절차에 의해 2005년 이전 입학생의 경우 학생회비를 정액 270,000원으로 정한다.
- 3) 2005년 이전 입학생의 경우, 휴학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06년도 이후에 복학하더라도 27만원의 정액 학생회비에 적용받는다.
- 4) 회비 수납에 관한 과도적 절차

| 학번 | 기납입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합 |
|----|-----|-------|-------|-------|-------|-------|-------|----|
| 01 | 17 | 10 | | | | | | 27 |
| 02 | 17 | 1 | 9 | | | | | 27 |
| 03 | 17 | 0 | 3 | 7 | | | | 27 |
| 04 | 17 | 0 | 2 | 3 | 5 | | | 27 |
| 05 | 17 | 0 | 1 | 2 | 3 | 4 | | 27 |
| 06 | 무 | 4.5 | | | | | | |

(단위 만원)

제 13 장 수익 사업

13-1. (일반 규정)

- 1) 학생회는 특정 사안에 대한 기금 마련을 위해 각종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다.
- 2) 학생회는 수익사업을 벌일 때에 반드시 기금 마련의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 3) 학생회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바로 학생회비로 귀속되며 사업 당시 명시한 목적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한다.
- 4) 학생회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적절하게 지출되었는지에 대해 반드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 5) 본회 회원은 의림제 등의 기간에 본회 회장의 인가를 받아 학생회와는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6) 본회 회원에 의한 개별적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개인 혹은 집단에 귀속되거나 본회 회장이 지정하는 소정 금액을 학생회비로 납부해야 한다.

제 14 장 회칙 개정

- 1) 본회의 회칙 개정은 운영위 2/3 이상 또는 본회의 재적인원 1/5이상의 발의로 한다.
- 2) 학생회장은 개정안을 접수한 즉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3) 공고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총회에 의결을 한다.
- 4)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학생회장이 즉시 공포한다.
- 6) 본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7)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006년 3월 22일 개정안